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 승 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이 법률 제11089호로 2011년 11월 17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2012년 11월 18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이 법률에서 예술인의 복지지원은 산재보험 가입 추진으로 결정되었다. 같은 법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에서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예술인복지법의 첫 모습은 예술인의 산재보험제도 설계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제도의 구체적인 설계는 첫 단계로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은 공연(연극, 무용, 음악, 국악), 영화, 대중예술(방송 드라마) 분야의 관련 기관이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면담 방식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두 장르로 크게 구분하여 연극인과 방송영상제작(드라마)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지에 실린 연극과 방송영상제작 분야의 두 논문이 바로 이 실태조사 결과의 요약이라 할 수 있다.

2차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이라 한다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에 의거할 때에 예술인의 ‘근로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흔히 예상하고 있는 사실에 어긋나지 않게 예술인의 경제적 처우가 결코 좋지 못하다는 점, 이 때문에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틀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제도 설계가 무척 어려운 작업이라는 점 등이다.

이로 볼 때, 「예술인 복지법」 제정의 취지로 되돌아감으로써 산재보험이 예술인에게 어떠한 실질적 혜택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 과정을 지켜 보았던 박영정 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당시의 논점을 본지에서 정리하고 있어 귀중한 시사점을 얻게 된다. 특히 유네스코의 제21차 총회에서 예술인의 고용·작업·생활 여건에 대한 정책이 제시된 이래 「예술인 복지법」으로 한국에서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yeesy@kli.re.kr).

구체화되기까지 31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근로관계가 명확한 예술인이라면, 현행의 산재보험제도 속에서 이들은 보험적용대상 이므로 만일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근로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예술인의 경우로 귀착된다. 이들은 ‘근로형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영업자일지도 모르며, 자영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가까울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현행의 산재보험제도로는 예술인을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가까운 개념으로 정의하여 포함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류붐을 타고 외국관광객의 여행일정에 반드시 포함되는 예술작품을 만들어 내는 창작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작품을 한 편 상연하기도 어려운 예술단체가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게다가 근로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예술분야 종사자를 현행의 산재보험제도가 ‘안전망’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내려면, 참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예술인을 어떠한 방식으로 산재보험제도의 틀에 포괄하게 될지 「예술인 복지법」 시행을 반년쯤 앞둔 지금 구체적 시행방안의 제시가 더디다. 그만큼 고심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마냥 늦출 수는 없을 것이므로 조만간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제도가 수립되고, 이에 따라 관련 법규가 개정됨으로써 시행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술 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재해나 직업병 등의 피해를 줄이고, 나아가 위험 자체를 예방할 수도 있게 된다.

다음으로 남은 과제라 한다면,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책일 것이다. 본지의 논문에서도 확인되는 사실로서 예술인의 부정기적 활동과 이에 따른 수입의 불안정성은 예술인 본인과 가족의 고통을 수반하지만, 예술 활동의 위축과 퇴보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 예술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의 틀을 세밀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예술인 복지법」 제정의 취지라 하겠다.

발레리나의 수려한 몸짓은 결코 ‘가난’에서 나오지 않는다. 예술과 생활 사이의 긴장이 더 나은 예술 창작으로 승화할 수도 있을 것이나 예술인의 한숨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 50만 명으로 추산되는¹⁾ 예술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을 고대해 본다. **KLI**

1) 김효정(『문화예술분야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현장 연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은 문화예술직 종사자를 503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화예술 관련직 종사자를 포함하면, 580천 명이다.